

2018학년도 제1차
<제334차 이사회 회의록>

2018. 5. 17.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8학년도 제1차

〈제33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9 인	2 인

1. 일 시 : 2018. 5.17(목) 07:30 ~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8년 5월 9일)

2.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9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이사 : 신희택, 김 성(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총장 박형주, 의무부총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처장 최정주
총무처장 임재익,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병원장 탁승제
행정부원장 박재호, 재무회계팀장 안영찬(대학), 이재권(병원) (10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행정처장 최종범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신창규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아홉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료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박재호 행정부원장,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4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8-59호(2018.5.9)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2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3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4호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의료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8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의안 제10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11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12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13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14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2차) 승인(안), 의안 제15호 법인 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 의안 제16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등 16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 정수 변경 건입니다. 현행 이사 정수 11명을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차기 이사회에서는 박형주 총장을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에 위치한 북성주차장 빌딩 매각 처분에 따라 해당 건물의 명칭 및 주소를 삭제하고자 하며, (주)대아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제16대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65세로 정하고 있는 총장의 정년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임용 당시 연령 기준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을 65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학교 경영을 위해 임기 중에는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정관 제89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학교 본부 처장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우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의결을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처장 보직의 임용권 변경 관련입니다.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경우 행정처장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처장 보직은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직원 정원 운용에 대한 기준을 별표의 직원 정원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5급 이상 직원의 경우 직급 별로 일반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 : 학장과 대학원장에 대한 대우교수의 보임근거는 2011년도 약대가 신설될 당시 국내 최고의 석학을 모셔오게 되면서 마련되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전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처장 보직에 대해서도 능력이 입증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대우교수로 보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는 있겠으나, 아주 제한적으로 신중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학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이의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u>11인</u>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u>12인</u>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안)
<p>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p> <p>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2. 감사 2인</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 온천동 상가 2. (삭제 2013.6.27) 3. 군산 빌딩 4. <u>북성주차장 빌딩</u>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7. 원천빌딩 8. (주)대아 9. (주)대아정보시스템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어드대로 215 (온천동) 2. (삭제 2013.6.27) 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중앙로3가) 4. <u>북성주차장 빌딩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96 (북성로1가)</u>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원천동) 7. 원천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p>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 온천동 상가 2. (삭제 2013.6.27) 3. 군산 빌딩 4. <삭제>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7. 원천빌딩 8. (주)대아 9. (주)대아정보시스템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어드대로 215 (온천동) 2. (삭제 2013.6.27) 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중앙로3가) 4. <삭제> 5. (삭제 2012.7.9) 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원천동) 7. 원천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안)
8. (주) 대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8. (주) 대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2호, 303호 (원천동)
9. (주)대아정보시스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9. (주)대아정보시스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49번길 46 (원천동)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49번길 46 (원천동)
<p>제46조 (임용)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u>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제46조 (임용)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u>총장은 임용 당시 65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임기 중에는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p>
<p>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총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전문대학의 처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안)																																																																																																																																																																																																																																																																																																			
<p>⑥ 총장은 제2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p> <p>제89조(본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②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삽입></p> <p>③ 각 처 및 기타 본부조직의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별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 직군 직급</th> <th>법인</th> <th>아주대학 교</th> <th>의료원</th> <th>아주자동차 대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명</td> <td>250명</td> <td>3,079명</td> <td>18명</td> </tr> <tr> <td rowspan="8">일반 직</td> <td>소계</td> <td>9명</td> <td>156명</td> <td>205명</td> <td>14명</td> </tr> <tr> <td>2급</td> <td>1명</td> <td>2명</td> <td>1명</td> <td>-</td> </tr> <tr> <td>3급</td> <td>1명</td> <td>4명</td> <td>4명</td> <td>2명</td> </tr> <tr> <td>4급</td> <td>1명</td> <td>19명</td> <td>20명</td> <td>2명</td> </tr> <tr> <td>5급</td> <td>2명</td> <td>30명</td> <td>30명</td> <td>3명</td> </tr> <tr> <td>6급</td> <td>2명</td> <td>42명</td> <td>94명</td> <td>4명</td> </tr> <tr> <td>7급</td> <td>1명</td> <td>30명</td> <td>45명</td> <td>3명</td> </tr> <tr> <td>8급</td> <td>1명</td> <td>29명</td> <td>11명</td> <td>-</td> </tr> <tr> <td rowspan="8">기술 직</td> <td>소계</td> <td>-</td> <td>65명</td> <td>2,292명</td> <td>4명</td> </tr> <tr> <td>2급</td> <td>-</td> <td>1명</td> <td>1명</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2명</td> <td>3명</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5명</td> <td>27명</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15명</td> <td>147명</td> <td>1명</td> </tr> <tr> <td>6급</td> <td>-</td> <td>14명</td> <td>624명</td> <td>3명</td> </tr> <tr> <td>7급</td> <td>-</td> <td>14명</td> <td>979명</td> <td>-</td> </tr> <tr> <td>8급</td> <td>-</td> <td>14명</td> <td>511명</td> <td>-</td> </tr> <tr> <td rowspan="5">가능 직Ⅰ</td> <td>소계</td> <td>1명</td> <td>22명</td> <td>30명</td> <td>-</td> </tr> <tr> <td>6등급</td> <td>-</td> <td>18명</td> <td>20명</td> <td>-</td> </tr> <tr> <td>7등급</td> <td>-</td> <td>2명</td> <td>6명</td> <td>-</td> </tr> <tr> <td>8등급</td> <td>1명</td> <td>2명</td> <td>4명</td> <td>-</td> </tr> <tr> <td>9등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가능 직Ⅱ</td> <td>소계</td> <td>-</td> <td>4명</td> <td>102명</td> <td>-</td> </tr> <tr> <td>7등급</td> <td>-</td> <td>2명</td> <td>102명</td> <td>-</td> </tr> <tr> <td>8등급</td> <td>-</td> <td>2명</td> <td>-</td> <td>-</td> </tr> <tr> <td>9등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 직</td> <td>소계</td> <td>1명</td> <td>3명</td> <td>450명</td> <td>-</td> </tr> </tbody> </table>		기관 직군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총계	11명	250명	3,079명	18명	일반 직	소계	9명	156명	205명	14명	2급	1명	2명	1명	-	3급	1명	4명	4명	2명	4급	1명	19명	20명	2명	5급	2명	30명	30명	3명	6급	2명	42명	94명	4명	7급	1명	30명	45명	3명	8급	1명	29명	11명	-	기술 직	소계	-	65명	2,292명	4명	2급	-	1명	1명	-	3급	-	2명	3명	-	4급	-	5명	27명	-	5급	-	15명	147명	1명	6급	-	14명	624명	3명	7급	-	14명	979명	-	8급	-	14명	511명	-	가능 직Ⅰ	소계	1명	22명	30명	-	6등급	-	18명	20명	-	7등급	-	2명	6명	-	8등급	1명	2명	4명	-	9등급	-	-	-	-	가능 직Ⅱ	소계	-	4명	102명	-	7등급	-	2명	102명	-	8등급	-	2명	-	-	9등급	-	-	-	-	별정 직	소계	1명	3명	450명	-	<p>⑦ 총장은 제2항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석좌교수 및 대우부교수 이상의 특별임용교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총장이 면직한다.</p> <p>제89조(본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u>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별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 직군 직급</th> <th>법인</th> <th>아주대학 교</th> <th>의료원</th> <th>아주자동차 대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명</td> <td>250명</td> <td>3,079명</td> <td>18명</td> </tr> <tr> <td rowspan="8">일반 직</td> <td>소계</td> <td>9명</td> <td>156명</td> <td>205명</td> <td>14명</td> </tr> <tr> <td>2급</td> <td>1명</td> <td>2명</td> <td>1명</td> <td>-</td> </tr> <tr> <td>3급</td> <td>1명</td> <td>4명</td> <td>4명</td> <td>2명</td> </tr> <tr> <td>4급</td> <td>1명</td> <td>19명</td> <td>20명</td> <td>2명</td> </tr> <tr> <td>5급</td> <td>2명</td> <td>30명</td> <td>30명</td> <td>3명</td> </tr> <tr> <td>6급</td> <td>2명</td> <td>42명</td> <td>94명</td> <td>4명</td> </tr> <tr> <td>7급</td> <td>1명</td> <td>30명</td> <td>45명</td> <td>3명</td> </tr> <tr> <td>8급</td> <td>1명</td> <td>29명</td> <td>11명</td> <td>-</td> </tr> <tr> <td rowspan="8">기술 직</td> <td>소계</td> <td>-</td> <td>65명</td> <td>2,292명</td> <td>4명</td> </tr> <tr> <td>2급</td> <td>-</td> <td>1명</td> <td>1명</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2명</td> <td>3명</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5명</td> <td>27명</td> <td>-</td> </tr> <tr> <td>5급</td> <td>-</td> <td>15명</td> <td>147명</td> <td>1명</td> </tr> <tr> <td>6급</td> <td>-</td> <td>14명</td> <td>624명</td> <td>3명</td> </tr> <tr> <td>7급</td> <td>-</td> <td>14명</td> <td>979명</td> <td>-</td> </tr> <tr> <td>8급</td> <td>-</td> <td>14명</td> <td>511명</td> <td>-</td> </tr> <tr> <td rowspan="5">가능 직Ⅰ</td> <td>소계</td> <td>1명</td> <td>22명</td> <td>30명</td> <td>-</td> </tr> <tr> <td>6등급</td> <td>-</td> <td>18명</td> <td>20명</td> <td>-</td> </tr> <tr> <td>7등급</td> <td>-</td> <td>2명</td> <td>6명</td> <td>-</td> </tr> <tr> <td>8등급</td> <td>1명</td> <td>2명</td> <td>4명</td> <td>-</td> </tr> <tr> <td>9등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가능 직Ⅱ</td> <td>소계</td> <td>-</td> <td>4명</td> <td>102명</td> <td>-</td> </tr> <tr> <td>7등급</td> <td>-</td> <td>2명</td> <td>102명</td> <td>-</td> </tr> <tr> <td>8등급</td> <td>-</td> <td>2명</td> <td>-</td> <td>-</td> </tr> <tr> <td>9등급</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 직</td> <td>소계</td> <td>1명</td> <td>3명</td> <td>450명</td> <td>-</td> </tr> </tbody> </table>		기관 직군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총계	11명	250명	3,079명	18명	일반 직	소계	9명	156명	205명	14명	2급	1명	2명	1명	-	3급	1명	4명	4명	2명	4급	1명	19명	20명	2명	5급	2명	30명	30명	3명	6급	2명	42명	94명	4명	7급	1명	30명	45명	3명	8급	1명	29명	11명	-	기술 직	소계	-	65명	2,292명	4명	2급	-	1명	1명	-	3급	-	2명	3명	-	4급	-	5명	27명	-	5급	-	15명	147명	1명	6급	-	14명	624명	3명	7급	-	14명	979명	-	8급	-	14명	511명	-	가능 직Ⅰ	소계	1명	22명	30명	-	6등급	-	18명	20명	-	7등급	-	2명	6명	-	8등급	1명	2명	4명	-	9등급	-	-	-	-	가능 직Ⅱ	소계	-	4명	102명	-	7등급	-	2명	102명	-	8등급	-	2명	-	-	9등급	-	-	-	-	별정 직	소계	1명	3명	450명	-
기관 직군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총계	11명	250명	3,079명	18명																																																																																																																																																																																																																																																																																																	
일반 직	소계	9명	156명	205명	14명																																																																																																																																																																																																																																																																																																
	2급	1명	2명	1명	-																																																																																																																																																																																																																																																																																																
	3급	1명	4명	4명	2명																																																																																																																																																																																																																																																																																																
	4급	1명	19명	20명	2명																																																																																																																																																																																																																																																																																																
	5급	2명	30명	30명	3명																																																																																																																																																																																																																																																																																																
	6급	2명	42명	94명	4명																																																																																																																																																																																																																																																																																																
	7급	1명	30명	45명	3명																																																																																																																																																																																																																																																																																																
	8급	1명	29명	11명	-																																																																																																																																																																																																																																																																																																
기술 직	소계	-	65명	2,292명	4명																																																																																																																																																																																																																																																																																																
	2급	-	1명	1명	-																																																																																																																																																																																																																																																																																																
	3급	-	2명	3명	-																																																																																																																																																																																																																																																																																																
	4급	-	5명	27명	-																																																																																																																																																																																																																																																																																																
	5급	-	15명	147명	1명																																																																																																																																																																																																																																																																																																
	6급	-	14명	624명	3명																																																																																																																																																																																																																																																																																																
	7급	-	14명	979명	-																																																																																																																																																																																																																																																																																																
	8급	-	14명	511명	-																																																																																																																																																																																																																																																																																																
가능 직Ⅰ	소계	1명	22명	30명	-																																																																																																																																																																																																																																																																																																
	6등급	-	18명	20명	-																																																																																																																																																																																																																																																																																																
	7등급	-	2명	6명	-																																																																																																																																																																																																																																																																																																
	8등급	1명	2명	4명	-																																																																																																																																																																																																																																																																																																
	9등급	-	-	-	-																																																																																																																																																																																																																																																																																																
가능 직Ⅱ	소계	-	4명	102명	-																																																																																																																																																																																																																																																																																																
	7등급	-	2명	102명	-																																																																																																																																																																																																																																																																																																
	8등급	-	2명	-	-																																																																																																																																																																																																																																																																																																
	9등급	-	-	-	-																																																																																																																																																																																																																																																																																																
별정 직	소계	1명	3명	450명	-																																																																																																																																																																																																																																																																																																
기관 직군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총계	11명	250명	3,079명	18명																																																																																																																																																																																																																																																																																																	
일반 직	소계	9명	156명	205명	14명																																																																																																																																																																																																																																																																																																
	2급	1명	2명	1명	-																																																																																																																																																																																																																																																																																																
	3급	1명	4명	4명	2명																																																																																																																																																																																																																																																																																																
	4급	1명	19명	20명	2명																																																																																																																																																																																																																																																																																																
	5급	2명	30명	30명	3명																																																																																																																																																																																																																																																																																																
	6급	2명	42명	94명	4명																																																																																																																																																																																																																																																																																																
	7급	1명	30명	45명	3명																																																																																																																																																																																																																																																																																																
	8급	1명	29명	11명	-																																																																																																																																																																																																																																																																																																
기술 직	소계	-	65명	2,292명	4명																																																																																																																																																																																																																																																																																																
	2급	-	1명	1명	-																																																																																																																																																																																																																																																																																																
	3급	-	2명	3명	-																																																																																																																																																																																																																																																																																																
	4급	-	5명	27명	-																																																																																																																																																																																																																																																																																																
	5급	-	15명	147명	1명																																																																																																																																																																																																																																																																																																
	6급	-	14명	624명	3명																																																																																																																																																																																																																																																																																																
	7급	-	14명	979명	-																																																																																																																																																																																																																																																																																																
	8급	-	14명	511명	-																																																																																																																																																																																																																																																																																																
가능 직Ⅰ	소계	1명	22명	30명	-																																																																																																																																																																																																																																																																																																
	6등급	-	18명	20명	-																																																																																																																																																																																																																																																																																																
	7등급	-	2명	6명	-																																																																																																																																																																																																																																																																																																
	8등급	1명	2명	4명	-																																																																																																																																																																																																																																																																																																
	9등급	-	-	-	-																																																																																																																																																																																																																																																																																																
가능 직Ⅱ	소계	-	4명	102명	-																																																																																																																																																																																																																																																																																																
	7등급	-	2명	102명	-																																																																																																																																																																																																																																																																																																
	8등급	-	2명	-	-																																																																																																																																																																																																																																																																																																
	9등급	-	-	-	-																																																																																																																																																																																																																																																																																																
별정 직	소계	1명	3명	450명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안)						
직군	기관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직군	기관 직급	법인	아주대학 교	의료원	아주자동차 대학
	2급	1명	-	-	-		2급	1명	-	-	-
	3급	-	-	-	-		3급	-	-	-	-
	4급	-	2명	-	-		4급	-	2명	-	-
	5급	-	1명	130명	-		5급	-	1명	130명	-
	6급	-	-	320명	-		6급	-	-	320명	-
	7급	-	-	-	-		7급	-	-	-	-
	8급	-	-	-	-		8급	-	-	-	-
(신 설)					*아주대학교의 경우 5급 이상의 직원정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일반직과 기술직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호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9,8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6,103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 및 기부금수입이 2,377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961백만원, 교육외수입이 88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9,529백만원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3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가 3,672백만원, 관리운영비 1,900백만원, 연구학생경비 3,128백만원, 교육외비용이 38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8,738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이 478백만원, 고정자산 매입지출이 66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5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2.28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31,986백만원이며, 부채는 4,215백만원, 기본금 총액은 27,7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4,753백만원, 투자와 기타자산이 4,591백만원, 고정자산이 22,642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176백만원, 고정부채가 39백만원이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4,586백만원, 운영차액 926백만원, 전기이월운영차액 1,690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64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1,9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9,591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6,103백만원, 전입 및 기부금수입 2,377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961백만원, 교육외수입이 150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3,672백만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성호 이사 이영현

관리운영비 3,039백만원, 연구학생경비 3,128백만원, 교육외비용 38백만원, 기본금대체액 478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64백만원으로 비용총계는 9,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다산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결산(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의 2017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6학년도 실적대비 8.3% 증가한 514,014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488,038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44.6% 증가한 25,97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22,628백만원, 의료외비용이 16,588백만원으로 6,90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8.2.28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53,268백만원으로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형 이사 이영현

서 유동자산이 97,532백만원, 고정자산이 155,736백만원이며, 부채와 자본은 유동부채가 105,006백만원, 고정부채 44,578백만원, 자본이 103,6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583,888백만원이며, 총지출 금액은 544,087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39,801백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485,289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8,725백만원, 의료외수입이 23,420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507백만원, 기타고정부채수입이 3,200백만원, 차입금수입은 4,868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37,8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97,099백만원, 재료비는 173,274백만원, 관리비는 65,351백만원, 의료외비용은 19,608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은 6,150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은 63백만원, 고정부채상환 9,788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출금은 57,908백만원이 되겠으며 차기 이월운영자금은 39,8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다산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7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익성 검토입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병동의 주 진료과가 부재하여 입원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입원 진료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의사간 업무협약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병상가동을 및 의료이익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하며 간호사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병상가동을 및 이익률을 제고하고, 간호사 배치기준을 조정하며, 중증·급성기 환자의 입원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진료과별 전공의 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진료과의 경우 정원에 미달이 되었는데, 기피 이유로 교실의 분위기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업무로딩 등이 있었습니다. 비인기과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과계 교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인기과의 경우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4 호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주요 내용은 의료원 제 규칙의 제정과 폐쇄 절차에 있어, 실제 최종 심의기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료원 규정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료원운영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규정류관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 ① 모든 규정의 제정과 폐쇄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공포로 발효한다.	제9조(심의확정 및 발효) ① (현행과 같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② 학칙 이외의 제규칙의 제정과 폐제는 교무회의(의료원은 <u>규정류심의회</u>)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확정·공포로 발효한다. 단,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장의 확정·공포로 발효한다.</p> <p>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령 또는 상위 규정류의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의 경우 교무회의(의료원은 <u>규정류심의회</u>) 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학칙 이외의 제규칙의 제정과 폐제는 교무회의(의료원은 <u>의료원운영회의</u>)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확정·공포로 발효한다. 단,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장의 확정·공포로 발효한다.</p> <p>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령 또는 상위 규정류의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의 경우 교무회의(의료원은 <u>의료원운영회의</u>) 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제 5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병원 산하 연구기관인 임상시험센터의 역할이 단순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 부서로서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원 부서 직제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병원장 직속으로 임상시험센터 소장을 두고,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운영팀장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운영팀장을 신설하여 관리운영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반 규정류 및 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 기대효과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 14 조(부속병원) ① 내지 ⑤ <생략> ⑥ 원장 직속으로 <u>병원경영팀, 임상연구윤리센터,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u>,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u>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임상연구윤리센터,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u></p>	<p>제 14 조(부속병원) ① 내지 ⑤ <생략> ⑥ 원장 직속으로 <u>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병원경영팀, 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윤리센터, 적정진료관리실,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윤리센터에는 소장을,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임상시험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운영팀장을,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u></p>
	<p>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제 6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주요 내용은 대우학원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기관의 직책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겸임(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7 조(겸직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삽입>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제 7 조(겸직제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공공기관 <삭제> 또는 <u>대우학원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u> 4.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제 7 호 의료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 이영환

(의료원 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8 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받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기타 대외기관 평가 등을 대비하여 적정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고, 학교 및 학과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신입교원 TO를 배분하고자 합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학과별 TO 배분 일정을 앞당겨 충분한 홍보 및 리쿠르팅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입교원 초빙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으로, 기초 및 전공역량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해외 석학의 추천서 제출을 통해 우수교원 평가 제도를 보완하며, 학과가 특별히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건 협의를 통해 특별채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년트랙 15명, 비정년트랙 5명 등 총 20명을 증·충원할 예정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15명은 전년도 미충원 인원 및 중도사직 T/O 2명과 정년퇴직 T/O 13명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총 5명으로 전년도 미충원 인원 2명과 2018년 중도퇴직 인원 3명입니다. 세부 임용계획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교원 정원 조정 및 증·충원 심사기준으로 기초교원은 의과대학 2000년 이후 입학한 인재들의 우수성을 고려 M.D.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Ph.D. 교수의 경우 과별 T/O 개념을 떠나 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분야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기관 차원에서 분야를 정하고 공개채용으로 선발하고자 하며, 임상교원은 특임교원에서 전임교원 전환 요청사항에 대해서 진료실적,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원은 사직 대체로 4명, 증·충원 인력으로 31명을 초빙하여 총 311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9 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임제익 : 2000년 7월 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캠퍼스플라자 전 임차인인 로코코에 의한 불법전대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대납한 전대보증금과 계약해지 정산금 총 273,908,252원에 대한 채권추심 결과,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내용상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회계 건전성을 위한 대손상각 처리로 판단되기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0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임제익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 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82,616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3,032백만원, 전입금 수입 59,407백만원, 기부금수입 4,511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9,220백만원, 교육부대수입 13,973백만원, 교육외수입은 2,747백만원이며, 기타자산수입은 180백만원, 임의기금인출수입 37,597백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입금수입이 2,050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9,8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보수가 121,247백만원, 관리운영비 21,752백만원, 연구비 7,471백만원, 학생경비 67,563백만원, 교육외비용은 822백만원이며, 임의기금적립금이 36,657백만원, 유형고정자산매입이 14,865백만원이고 장기차입금상환액 1,000백만원, 임대보증금환급 835백만원으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10,4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2.28 현재 교비회계의 자산총액은 316,079백만원, 부채총액은 73,737백만원, 기본금총액은 242,342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동자금은 58,697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6,788백만원, 투자자산이 115백만원, 기타자산 1,414백만원, 임의기금 89,292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49,773백만원으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2,138백만원 증가한 316,079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5,081백만원, 장기차입금이 6,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2,656백만원으로서 부채 총액은 전년대비 420백만원 감소한 73,7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출연기본금이 91,91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89,292백만원, 운영차액이 61,131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42,342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16,0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총수익은 232,898백만원, 운영비용은 230,340백만원, 기본금대체액 36,657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 37,597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3,4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다산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상담지도제도의 적정성입니다. 아주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한 학생들 중 13%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센터의 상담인력이 4명에 불과하여 상담 대기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담실 환경도 열악하고 학생들의 인지도도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련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담인력의 증원, 센터의 위상 강화, 아주대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교내 연구비 지급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이후, 기한 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연구비 환수를 위한 추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연구비 환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연구년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보고서 및 활용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위반 시 연구년 재신청 제한 외에 별도의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제재 등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번째로 전산(AIMS2)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7.11.1. 대우정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비스수준 합의서에서 정한 예정된 수행일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일정 재조정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건비성 수당이 각 부서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화 및 표준화가 필요해 보이고 각 부서에서 결의서를 작성할 때, 수당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산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지적한 사항으로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결의서만 예산부서의 사전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출항목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교내 연구비 지급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 연구비 환수의 문제는 몇 년 전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학교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 :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고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운영계산서를 보면 등록금수입은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보수는 증가한 부분이 보이는데, 앞으로 보수와 관련된 인건비 증가와 기타 관리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1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됨에 따라 2018.3.1.부로 법과대학을 폐지하도록 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제규정 상 법과대학이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총장 직속기구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기금 및 홍보 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장 직속기구로 대외협력실을 신설하고, 기획처 소속인 대학발전팀과 브랜드전략실의 명칭을 커뮤니케이션팀으로 변경하여 대외협력실 산하에 두는 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존 비서실 산하의 대외협력팀은 폐지하고 비서실은 고유의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23일 개정 사항인 학장, 원장 보직의 대우교수 보임근거와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처장 보직의 대우교수 보임근거를 직제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행

- 19 -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u>법과대학</u>,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p>4. <삭제></p>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p>제5조 (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삭제>,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희

이사

현 행	개 정(안)
<p>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p> <p>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p> <p>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아주상담·지원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p> <p>8. 총무처 : 예비군연대</p> <p>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1.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3. <삭제></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p> <p>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을 둔다.</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의협력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p> <p>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8조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삽입></p> <p>② 대학에 부학장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p>	<p>제8조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u>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u></p> <p>②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③ 대학에 학과를 설치하고,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과장을 둘 수 있다.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④ 대학 및 학과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대학에 전공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⑤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설치하고, 학사과정 연계 학과의 소속 학장 및 해당 학과장이 통할한다. 단, 연계학과가 없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장을 두고,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⑥ 일반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각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과정, 전공을 설치하고 각 학과, 과정, 전공에 각각 학과장, 과정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⑧ 특수학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p> <p>⑨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처는 교육 관련 행정 및 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및 교원팀을 둔다.</p> <p>② 연구정보처는 연구관리 및 전산개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 및 정보시스템팀을 둔다.</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내지 ④(현행과 같음)</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p> <p>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재무회계팀 및 시설팀을 둔다.</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u>대학발전기금 조성</u>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u>대학발전팀</u> 및 감사팀을 둔다.</p> <p>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p> <p>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국제교류팀 및 국제화사업팀을 둔다.</p> <p>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동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u><삼임></u></p> <p>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화사업팀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u><삭제></u>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u><삭제></u> 및 감사팀을 둔다.</p> <p>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p>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동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u>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u></p> <p>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p> <p>② <u>브랜드전략실</u>은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p>	<p>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대외협력실</u>은 기금모금 업무 및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희

현 행	개 정(안)
<p>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외협력팀을 둔다.</p> <p>④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p> <p>⑧ <u>브랜드전략실</u>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u>브랜드전략실</u>의 경우 <삽입>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⑩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⑪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⑫ <u>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⑬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업무를 담당한다.</p> <p>④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p>⑧ <u>대외협력실</u>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u>대외협력실</u>의 경우 <u>특별임용교원</u>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⑨ 내지 ⑪ (현행과 같음)</p> <p>⑫ <삭제></p> <p>⑬ (현행과 같음)</p> <p>⑭ <u>대외협력실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안)
<p>⑭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⑮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⑮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⑯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12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2018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현행대로 학교의 장 추천자 중 3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우선 학교의 장 추천자 여섯 분 중 세 분의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추천 순위를 적어 주셨는데 총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총장 추천자 중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의학과 백은주 교수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으로 선임·의결하다.)

이 사 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문길주 이사님, 김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께서 징계위원을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떨까 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사 문길주, 이사 박상일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선임을 승낙하다.)

오늘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신 김성 이사님께는 추후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소프트웨어학과 김민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의학과 백은주 교수 6인을 임기 1년(2018.6.1 ~ 2019.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3 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0,648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18,995백만원, 수익사업전입금 수입이 5,500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 1,500백만원, 예금이자수입 595백만원이며, 임대료수입 1,760백만원, 관리비수입이 228백만원, 잡수입 2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28,580백만원이며, 고정자산매각수입 2,959백만원, 장기차입금수입 4,817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이 135백만원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14,1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769백만원, 시설관리비 200백만원, 일반관리비 314백만원, 운영비 363백만원이며, 지급이자 343백만원, 전출금 10,315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12,304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 자산지출이 3,005백만원, 자산 및 부채지출이 7,290백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28,0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2.28 현재 자산규모는 369,137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4,633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54,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27,987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36백만원, 설치학교 172,621백만원, 출자금 12,290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73백만원, 수익용 예금이 26,828백만원, 임의퇴직기금이 630백만원, 유형고정자산이 46,787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69,137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74백만원, 장기차입금이 13,239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320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4,633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105,356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630백만원 등 기본금합계액은 354,504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69,1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운영수익은 37,512백만원, 운영비용은 19,572백만원, 기본금 대체액 3,005백만원 및 운영차액대체액은 △2,940백만원으로 당기운영차액은 17,8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상임이사 이영현 : 다음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8,441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운영수입이 4,667백만원, 임대료 수입이 3,419백만원, 관리비 수입 17백만원, 이자수입이 1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8,104백만원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3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보수가 673백만원, 시설관리비 21백만원, 일반관리비 436백만원, 운영비 701백만원이며, 재료비 613백만원, 일반업무회계전출금 5,500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7,944백만원이며, 자산 및 부채지출이 28백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4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2.28 현재 자산총액은 12,89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561백만원, 기본금총액은 12,3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이 339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60백만원, 유형고정자산이 12,1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231백만원, 고정부채는 330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561백만원이며, 자본금 등 기본금 합계액은 12,332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12,8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운영수익은 8,103백만원, 운영비용은 8,467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3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다산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

< 간 서 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 2017년 12월 기준으로 1.8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8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60.5%로 타 학교법인의 확보율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은 규모이며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1.81% 이상인 8.6%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외에 법인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성복 : 법인회계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4 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체(2차)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체(2차)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개요는 이전 이사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대금 1차 기체 승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에 총 약 7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장비 75억원은 리스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건물 신축 대금 약 657억원은 약 118억원의 수익용 예금과 약 69억원의 운영비 그리고 약 470억원의 기체를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1차 기체 약 177억원을 제328차 이사회(2017.5.18.)에서 승인하고 교육부 허가(2017.5.29.)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신축 과정 중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 제거 작업에 예정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교육부 기체 실행 허가 기간인 1년 이내에 약 177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약 48억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차 약 177억원, 2차 약 165억원, 3차 약 129억원 등 3차 분할 진행 계획이었던 기체를 1차 약 48억, 2차 약 129억, 3차 약 165억, 4차 약 129억원 등 4차로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변경된 4차 기체 계획 중 2차분인 약 129억원 기체 승인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안)을 상정한 것이며 기채처, 이율, 기채기간, 담보물건 등은 1차 기채 시와 동일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13년 기준으로 원금 약 471억원에 이자 약 169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중증재활요양병원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채 효과는 수익용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현재 60.5%에서 101.6%로 41.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2차)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2차) 승인 내용

구분	기채 허가 사항
기채 한도액	금일백이십팔억오천일백만원정(W12,851,000,000원)
기채처	제1금융권(우리은행)
이율	기준금리(KORIBOR) + 1.60%(1차 기채와 동일, 현재 3.24%)
기채기간	차입일로부터 13년(5년 거치 8년 상환)
담보물건	해당 없음
기채용도	수익용 건물(중증재활요양병원) 신축
상환재원	법인회계

제 15 호 법인 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법인수익사업체(장례식장) 성과급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16 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선임(안) 발의.

(총장 선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차기 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참석임원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34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이 저와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4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8 년 5 월 17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김 성 진	김성진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최 홍	최홍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문 휘 창	문휘창
감 사	배 홍 기	배홍기